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 창 군 수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8
----------	-----

제출년월일 : 2021. 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2020.12.08. 공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체육회의 회장 등과의 원활한 협의 유도를 위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본 구성요건을 명시하여 이를 우리군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함

나.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 사용 제한사항 완화

## 2. 주요내용

가.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요건 변경(제4조 제1항 ~ 제4항)

-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 변경 : 부군수 ⇒ 군수
- 당연직 위원 변경 : 군 체육회 사무국장 ⇒ 군체육회 회장

나. 기금의 사용 제한사항 완화(제15조)

- 기금 사업비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조성목표액의 100분의 80은 보존하여야 한다. ⇒ 기금 사업비는 해당 연도 기금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1.4.1. ~ 21.4.11.)
- 2)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수용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5명 이내”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군수”를 “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사무국장”을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심의회의결”을 “심회의결”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20”을 “40”으로 하고, “없으며 조성목표액의 100분의 80은 보존하여야 한다”를 “없다”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u>15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의장은 <u>부군수</u>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당연직 : 체육업무 담당과장, 교육청 체육담당 장학사, 군 체육회 <u>사무국장</u>, 읍·면 체육 회장</p> <p>2. (생 략)</p> <p>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u>담당</u>이 된다.</p> <p>제8조(회의) ① (생 략)</p> <p>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u>심의형의결</u>할 수 있다.</p> <p>제15조(기금의 사용) ①·② (생 략)</p>	<p>제4조(구성) ① ----- ----- <u>7명</u> 이상 <u>15명 이하</u>-----.</p> <p>② ----- <u>군수</u>-----.</p> <p>③ ----- -----.</p> <p>1. ----- ----- ----- <u>회장</u>----- -----</p> <p>2. (현행과 같음)</p> <p>④ ----- ----- ----- <u>팀장</u>-----.</p> <p>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심의의결</u>----- -----.</p> <p>제15조(기금의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p>

③ 기금 사업비는 해당 연도 기  
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  
여 집행할 수 없으며 조성목표  
액의 100분의 80은 보존하여야  
한다.

③ -----  
----- 40-----  
----- 없다.

# 관계법령 발취

## 1.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19. 12. 25.]

## 2.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시행 2021. 6. 9.]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제15조(기금의 사용) 제3항 '기금 사업비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조성목표액 : 50억원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를 위하여 2021년도 사업비는 현재기준 확정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나. 추계 결과

○ 예산소요액 : 635,000천원(2021년)

구 분	대상자수(명)	소요금액(천원)	비 고
합 계		635,000	
2021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4,000여명	230,000	
평창J스컵 U12&11 전국 청소년 축구대회	2,400여명	75,000	
제46회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	1,400여명	180,000	
평창 평화장사 씨름대회	1,000여명	120,000	
체육인의 밤	200여명	3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평창군체육진흥기금 및 이자수입금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연락처	(033) 330 - 20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체육진흥사업		635,000	635,000	635,000	635,000	635,000	3,17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635,000	635,000	635,000	635,000	635,000	3,175,000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